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

전라북도

1. 방역지침

[1] 살처분 명령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 조속실시

- 최초 발생농장 반경 500m내 가금류 및 감수성동물 전두수 살처분
- 살처분명령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농장에 대하여는 5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이행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것
- 살처분시 젊은 사람 위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작업시 마스크 착용, 작업 이후에는 목욕 등을 철저히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2] 상황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 상황실 운영
 - 발생 시·도 및 발생 시·군의 긴급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현장 통제초소 운영 등
 - 오염·위험지역 : 농장 출입로에 통제초소 설치·방역관 등 감시, 이동통제 등 집중관리
 - 경계지역 : 필요시 통제초소 운영, 농장 담당자 지정·전화예찰 및 결과 일일보고·폐사축 발생시 즉시 신고체제 운영
- 소독조치
 - 발생농장, 오염·위험지역 농장 1일 2회, 경계지역 농장 1일 1회

[3] 예찰강화

-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예찰강화
- * 기타 시·도는 매일 1회이상 예찰실시

[4] 의심축 신속 신고 유도 및 신고시 조치

- 시·도, 시·군 등 행정기관 및 가축방역기관에서는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의심축 발생시 신고를 신속히 하도록 조치 할 것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도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축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가축방역관이 관련 규정에 의거 가검물(시료)을 채취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 할 것

[5] 통제초소 감시 강화

- 도에서는 발생 현장 통제초소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 감시조를 편성하여 통제초소가 24시간 운영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초소 근무 이탈자·잠을 자는자·술을 먹는자 등 근무태만자에 대하여 인사상 경고 등 불이익 조치
 - 야간에는 21:00시 이후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통제초소를 순회하며 감시 할 것

[6] 소독 및 차단방역 철저

- 통제초소에는 이동식 소독장비를 길 양방향에 필히 설치
 - 통과 차량 중 가금 관련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사람에 대한 소독은 발판소독조 및 손세척 용기 비치
- 이동제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방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외에는 출입을 통제 할 것
- 소독 실시
 - 발생농장·오염지역·위험지역 농장 1일 2회, 경계지역 농장 1일 1회

7] 이동제한 기간 및 세부 방역조치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04-27호)”에 의거 조치

구 분	축종	오염지역(500m)	위험지역(3km)	경계지역(10km)
가금	닭	전두수 살처분	반출·입 금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오리	전두수 살처분	반출·입 금지	반출·반입금지 다만, 출하 3일전 관할시험소에 신고하여 검사후 음성인 경우 지정도축장 출하 허용
분뇨	공통	반출금지	농장내 매물 또는 축사 내 보관, 다만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 허용, 농장밖 반출은 금지	농장 밖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사료·갈짚·왕겨	공통	반출금지	농장밖 반출금지, 위험지역안 운행 차량 이용에 한하여 사료의 반입 허용	갈짚·왕겨는 농장밖 반출금지, 사료의 경우 소독 실시 후 농장내 반입
부화장	닭	폐쇄(부화란 폐기)	폐쇄(부화란 폐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부화 및 부화장 병아리 반출 허용
	오리	폐쇄(부화란 폐기)	폐쇄(부화란 폐기)	이동제한 지역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장 병아리 반출 허용
도축장	닭	폐쇄	경계지역산 닭만 도축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폐쇄	경계지역산으로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도축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경계지역의 오리에 한하여 도축 허용
종란	닭	폐기	폐기 다만, 이동제한전 생산된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오리	폐기	폐기	폐기
식용란	닭	폐기	폐기	예찰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 허용
	오리	폐기	폐기	폐기
출입자	공통	통제초소 및 가금류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통제초소 및 가금류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
차량	공통	가금류, 가금생산물, 약품, 사료차량은 바퀴소독후 통행 허용. 단, 계분차량 통행금지	가금류·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분요운반차량 통행금지	가금류·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분요운반차량 통행금지하되, 경계지역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운반차량은 소독후 이동 허용

※ 감수성동물도 이에 준한 조치 가능

[8] 발생원인 조사 철저

- 시·도에서는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 현지 조사팀에 대한 협조 강화

2. 살처분농가 보상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23조 및 제48조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3-26호)

☐ **지급대상** : 발생농장, 관련 부화장 및 예방살처분 농장의 살처분 닭, 종란 등 폐기·오염물건, 위험지역안 폐기 식란

- 평가방법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에 의함

☐ **살처분보상 관련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품목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자연란 생산 닭** : 대한양계협회에서 제시한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종계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② **자연란** : 납품업체와의 계약서·최근 거래기록 등을 감안 결정하되, 전체 생산란중 자연란으로 정기납품한 물량과 나머지 일반란으로 판매한 물량을 구분하여 산정

③ **사료·난좌 등 폐기 오염물건** : 폐기당시 시세를 감안하여 평가

- 발생농장의 폐기 오염물건에 대하여는 평가액의 40%를 지급

④ **종오리·오리종란** 보상가격은 생산비 등 관련자료 등을 검토·반영계획

⑤ **발생농장 보상금**은 신고지연 일수 등을 감안 차등지급

수의과학검역원

1. 병원성 규명 및 역학조사 등 방역관리 강화

□ 병원성 규명

- 외국의 발생주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발생주의 국내 유입경위 파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미국 농업연구청 가금질병연구소(SEPRL)에 병원성 및 유전자 분석 등 의뢰

□ 전라북도와 협의, 역학조사 등 발생원인 조사 철저

- 발생농장 인근 출몰 야생조류 : 분변 등 채취 바이러스 검사
- 농장 출입자와 관련이 있는 오리농장 및 인근 오리농장 : 채형(방역요원 동원) 및 혈청검사(검역원 주관, 시험소 협조)
- 최초 발병일부터 최소한 21일 이전동안 감염농장에 반입·반출된 물건(조류, 계란, 가금육, 사료, 깔짚, 폐기물, 기구 및 사람 등)의 추적 조사
- 발생농장을 방문한 축산조사자들이 농장방문 후 3일 이내에 방문한 타 농장이나 양계시설에 대한 추적
- 질병관리본부의 인체 역학조사에 검역원 역학조사반 참여
- 기타 역학관련 농장 등의 방역조치는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4-27호, 2004.5.17)에 의거 철저히 조치

2. 홍보방안 강구

-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소독실시요령·차단방역·임상증상 및 신고요령 등 홍보내용을 정리·배포
-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언론 및 국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조하여 홍보자료 작성

시·도 및 단체

□ 시·도

- 전국 가금류농가 방역 관리 강화
- 농장소독, 외부인·차량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소독제 선택, 구체적인 소독요령 등을 검역원·양계협회·계육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홍보, 필요시 리후렛 제작·배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검역원·전라북도와 협의 오리농장 등의 채혈 등 방역요원 지원
- 타 지역 방역요원 관내 농가 예찰활동 강화

□ 농협중앙회

- 발생지 지역축협등과 협의 발생지역 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지원
- 타 지역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질병 방역 지도·홍보

□ 양계협회·오리협회

- 농장소독, 외부인·차량(사료·가금수송차량 등)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독려
- 의심 닭·오리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토록 홍보

□ 계육협회

- 농장소독, 외부인·차량(사료·가금수송차량 등)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독려
- 가금류 도축장 가금수송차량(특히 어리장)세척·소독 강화
- 자체검사원 생체검사 등 도축검사 상화 조치
- 닭(오리)고기 가격 하락 및 소비 감소에 대비한 홍보 등 추진

□ 공통사항 : 농가홍보

- 홍보주체 : 양계 · 계육 · 오리협회 · 농협
- 홍보내용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소독실시요령 · 차단방역 · 임상 증상 및 신고요령 등 홍보내용을 정리 배포
- 홍보방법 : 우선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검역원 ARS 운용 후 홍보리후렛 제작 · 배포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1. 조류인플루엔자(AI) 개요

□ 정 의 :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병원성이 없는 것에서부터 치사율이 100%인 고병원성까지 다양

※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는 국제 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한국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원인체

- 사람에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병원체로 혈청형은 H형(15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되며 병원성은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분류되고 있음

※ 닭에서 고병원성은 H5와 H7혈청형에 의해서만 발생되고 있음

○ 바이러스 생존력

- 4℃온도에서 분변내에서는 최소 35일간 생존
- 계사 오염 먼지에서는 2주간 생존
- 오염된 물에서는 22℃에서는 4일간, 0℃에서는 30일간 생존
- 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 계란에 바이러스 오염시 64.5℃ 2.5분 열처리시 사멸함

□ 잠복기 : 수시간에서 2~3일(최장 21일)

□ 전파경로 : 오염된 비말, 물, 분변 등으로 전파됨

□ 임상증상

- 고병원성의 경우 80%이상 폐사, 비늘의 청색증, 얼굴의 부종

※ 1999년 이탈리아에서 고병원성(H7N1)이 발생하였을 당시 1,300만수의 사육가축이 폐사하였으며, 1983년 미국에서 고병원성(H5N2) 발생시에는 살처분 보상비 등 약 4억 9백만 달러(5,30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약병원성의 경우 다양한 폐사율(0~30%), 산란을 저하, 호흡기·소화기 증상

□ 백신개발 현황

- 혈청형이 다양하고 변이가 쉬워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힘들며, 전세계적으로도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특히 고병원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살처분 도태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인체에 대한 영향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중 일부 혈청형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결막염 혹은 사망을 유발함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예

- 1996년 영국에서 1명 감염하였으나 사망은 없었음 (H7N7)
- 1997년 홍콩에서 18명이 감염하여 6명 사망 (H5N1)
- 1999년 홍콩에서 어린이 2명 감염하였으나 사망은 없었음 (H9N2)
- 2003년 네덜란드에서 의사 1명 사망 (H7N7)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 국내발생상황

- '96.3~8월사이 경기 화성, 전북 정읍, 경북 영천 등에서 처음 발생
- 이후 '99년(7건), 2000년(30건), '01년(20건), '02(9건), '03.12현재(9건) 발생
- 국내 발생 AI의 혈청형은 H9N2로서 모두 약병원성임

□ 국외발생상황

- 미국('83), 호주('85, '94), 멕시코('95), 홍콩('97, '01, '03), 이탈리아('99), 칠레('02), 네덜란드('03)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 03년 네덜란드 발생당시 5,000만수 사육수중 절반인 2,500만수 폐사 및 살처분

3. 국내 조치사항

- 가금류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제정 운영('95년)
 -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부터는 수입금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정고시 운영('98.11)
- 홍콩의 HPAI발생에 따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하여 매수입건당 AI 검사중
- 네덜란드의 HPAI발생에 따라 네덜란드산 가금(그 생산물) 수입중지('03.3)